

2017학년도

제5차 대학평의원회 회의록

1. 일 시 : 2017년 12월 13일(수) 14:00~16:00

2. 장 소 : 화도관 2층 대회의실

3. 대학평의원회의원(11명) : 11명 중 8명 참석

4. 안건

□ 심의

- 1) 광운대학교 학칙 개정(안)
- 2) 대학원 통합학칙 개정(안)

□ 보고

- 1) 광운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개정(안)
- 2) 수강신청에 관한 규정 개정(안)
- 3) 계절수업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(안)
- 4) 연계융합전공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(안)
- 5) 전과에 관한 규정 개정(안)
- 6) 국내대학 수학 이수학점 인정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(안)
- 7) 수업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(안)
- 8) 온라인강좌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(안)
- 9) 복수전공제 시행세칙 폐지
- 10) 교육대학원 학사운영 내규 개정(안)
- 11) 대학원 학위논문에 관한 내규 개정(안)
- 12) 대학원 공동논문 지도교수에 관한 내규 제정(안)
- 13) 직제규정 개정(안)
- 14) 사무분장 규정 개정(안)
- 15) 연구년 규정 개정(안)
- 16) 장학 규정 개정(안)
- 17) 전자정보공과대학 공학교육프로그램 운영 규정 개정(안)
- 18) 공과대학 공학교육프로그램 운영 규정 개정(안)
- 19) 소프트웨어융합대학 공학교육프로그램 운영 규정 제정(안)
- 20) 산학협력단 직원인사 규정 개정(안)
- 21) 현장실습 운영 규정 전면 개정(안)

5. 회의 내용 및 결과

● 심의 안건

1) 광운대학교 학칙 개정(안)

- 교무처 교육지원팀장이 관련 내용을 설명하다.
- 의결내용 : 원안대로 의결하다.

2) 대학원 통합학칙 개정(안)

- 대학원 교학팀장이 관련 내용을 설명하다.
- 의결내용 : 원안대로 의결하다.

● 보고 안건

1) 광운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개정(안)

- 교무처 교육지원팀장이 관련 내용을 보고하다.

2) 수강신청에 관한 규정 개정(안)

- 교무처 교육지원팀장이 관련 내용을 보고하다.

3) 계절수업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(안)

- 교무처 교육지원팀장이 관련 내용을 보고하다.
- 휴학생이 계절수업 수강 후 복학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였으며, 가끔씩 휴학생이 계절수업 수강 후 타 학교 편입을 위해 자퇴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복학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설명하다.

4) 연계융합전공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(안)

- 교무처 교육지원팀장이 관련 내용을 보고하다.

5) 전과에 관한 규정 개정(안)

- 교무처 교육지원팀장이 관련 내용을 보고하다.

6) 국내대학 수학 이수학점 인정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(안)

- 교무처 교육지원팀장이 관련 내용을 보고하다.

7) 수업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(안)

- 교무처 교육지원팀장이 관련 내용을 보고하다.

8) 온라인강좌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(안)

- 교무처 교육지원팀장이 관련 내용을 보고하다.

9) 복수전공제 시행세칙 폐지

- 교무처 교육지원팀장이 관련 내용을 보고하다.

10) 교육대학원 학사운영 내규 개정(안)

- 대학원 교학팀장이 관련 내용을 보고하다.

11) 대학원 학위논문에 관한 내규 개정(안)

- 대학원 교학팀장이 관련 내용을 보고하다.
- 학위논문 제출자격에서 인문계열의 경우 SCI, SSCI 외에 A&HCI 게재실적도 포함이 되어야 함을 언급하고, 향후 대학원위원회에서 본 내용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하다.

12) 대학원 공동논문 지도교수에 관한 내규 제정(안)

- 대학원 교학팀장이 관련 내용을 보고하다.

13) 직제규정 개정(안)

- 기획평가팀장이 관련 내용을 보고하다.

14) 사무분장 규정 개정(안)

- 기획평가팀장이 관련 내용을 보고하다.
- 교육혁신원의 업무 분장에 관하여 향후 개정의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다.
즉, 교육관련 개발 업무는 교육관련 개발 및 지원업무로 수정되어야 하며 특히 교양 및 전공 교과과정 개발은 해당 업무를 진행하는 학과 또는 단과대학과의 업무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본 개정(안) 이후 재검토 및 수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다.
또한 교육관련 국책사업 선정지원 업무는 교육관련 국책사업 제반지원 업무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, 제2호(교육관련개발업무)에서 ‘대학교육혁신모델

연구 및 지원 관리 업무'를 신설하는 등 개정이 필요하므로 차기 기획관리위원회에서 본 내용을 심의해 줄 것을 당부하다.

- 교과과정 개발 업무를 놓고 교육혁신원과 각 단과대학 간의 업무 충돌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교육혁신원의 위상을 보다 더 높여야 하지 않는지 언급하였고, 이를 예방하기 위해 향후 '운영규정' 또는 '위원회' 등을 통하여 업무 조정을 진행할 것임을 설명하다.
- 체육부는 부속기관으로 유지하되 그 운영에 대한 업무는 대학본부인 학생복지팀에서 하는 것이 특이하고, 오히려 체육부 운영지원팀에서 행정을 할 때보다 교육서비스 만족도가 낮아지지 않을지 우려하다.
학생복지팀으로 행정업무가 이관되지만 체육부 특성상 감독 및 코치가 중심이 되어 학생관리를 하므로 서비스 만족도는 변함이 없을 것이며, 1명의 행정인력이 체육부를 지원하던 것보다 학생복지팀이 담당하게 되면서 보다 여유 있는 행정 지원이 가능하리라 예상한다고 답변하다.
- 체육부에 대한 업무 분장보다 체육특기생 자체 구조조정이 검토되어야 함을 언급하였고, 기획평가팀장이 내부에서 그 문제에 관하여 여러 검토를 하고 있다는 답변을 하다.

15) 연구년 규정 개정(안)

- 기획평가팀장이 관련 내용을 보고하다.

16) 장학규정 개정(안)

- 기획평가팀장이 관련 내용을 보고하다.

17) 전자정보공과대학 공학교육프로그램 운영 규정 개정(안)

- 공학교육혁신센터 계장이 관련 내용을 보고하다.

18) 공과대학 공학교육프로그램 운영 규정 개정(안)

- 공학교육혁신센터 계장이 관련 내용을 보고하다.

19) 소프트웨어융합대학 공학교육프로그램 운영 규정 제정(안)

- 공학교육혁신센터 계장이 관련 내용을 보고하다.

20) 산학협력단 직원인사 규정 개정(안)

- 기획평가팀장이 관련 내용을 보고하다.

- 산학협력단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학교의 기획처장과 총무처장이 참여하는 것

이 산학협력단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고, 비록 독립적인 법인의 산학협력단이라도 인사의 공정성을 보다 중요하게 판단하여 인사위원회 구성을 개정한 것임을 설명하다.

21) 현장실습 운영 규정 전면 개정(안)

- 기획평가팀장이 관련 내용을 보고하다.
- 의장이 폐회를 선언하다.